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농·축산업 경영 비용을 낮추어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콩나물재배업자를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5. 2. 27. ~ 3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기획재정부령 제 호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
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
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농민의 범위) 「 <u>농 · 축산 · 임 ·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</u> 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 <u>시설작물재배업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</u> ”이란 <u>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.</u>	제2조(농민의 범위) <삭 제>